

4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「규제자유특구」 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0년 07월 01일
제주테크노파크원장

1. 수요조사 목적

-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시행(19.4.17)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/신서비스 사업 분야, 추진기업(기관),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
-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확보

< 규제자유특구 >

- 각종 규제가 유예·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·신서비스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
-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(규제샌드박스)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,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·세제·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
- ※ 관련 법령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(약칭: 지역특구법)



<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절차 >

2.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

- 공고일 현재 제주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
 - ※ 반드시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이 특구 내 위치하면 제안 가능함
-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/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과 자연인
-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, 향후 특구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확보가 필수
-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, 재정·세제지원 제한

3. 수요조사 대상 사업

- 화장품, 블록체인, 에너지 등

4. 수요조사 접수 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0.07.01(수) ~ 2020.07.20.(월)
- 접수방법 : 온라인(www.sandboxjeju.net)접수
 - ※ 수요조사서 양식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(www.sandboxjeju.net) 에서 다운로드 가능

5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동 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
-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 통보되지 않음
-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수립 시,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(단,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 자격이 부여됨)
- 수요조사서와 함께 배부하는 “규제자유특구 관련 설명 자료” 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의 문의처에 문의 바람

6. 문의처

문의처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제주특별자치도	미래전략과	김상범 주무관	064-710-4712
제주테크노파크	규제자유특구사업단TF	김영표 연구원	064-720-2315
		오호건 연구원	064-720-2320
		장종필 연구원	064-720-2314

- 붙임 : 1. 수요조사서 1부.
2. 규제자유특구 관련 설명 자료 1부.
3.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리스트 1부

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수요조사서

■ 인적사항

제안기업(관)		기관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혁신기관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출연연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지원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R&D	<input type="checkbox"/> 비R&D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반구축사업		
제안자		직위		전화번호	
				e-mail	
소재지(주소)					
제안분야	① 화장품 ()		② 블록체인 ()		
	③ 에너지 ()		④ 기타()		

※ 해당분야에 v 체크, 기타의 경우 분야 작성

■ 제안내용

제안 사업명:	
사업개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기간 : • 총사업비 : • 사업목적(필요성) - - 	
사업내용	
<p style="color: red; font-size: small;">세부 사업 정의 및 범위 기술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 내용을 알수 있도록 도식화된 사업 설명 그림 제시</p>	

규제특례 요청 내용(사업추진 저해 현행 규제 등)		
신제품, 신서비스, 과정 등에서 발생한 규제 나열		
규제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 ※세부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기술		
<input type="checkbox"/> 규제신속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증특례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허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관련규제]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상거래 후 5년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함 (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2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/2항) ⇒ [실증특례] 금융기록 파기 불가에 대하여 off-chain을 활용한 기술적 삭제를 파기로 인정 		
현행 규제 및 개선 요청 내용		
현행 규제	특례 내용 (개선)	
<p>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(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)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.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. 다만,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. 	<p>전기사업법 제32조(전력의 직접 구매)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 및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*용량제한을 넓히려면 시행령도 개정해야함.*</p> <p>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(전력거래)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"도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<u>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</u> 	
<p>전기사업법 제31조(전력거래)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32조(전력의 직접 구매)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(전력의 직접 구매) 법 제32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"란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.</p>		

